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홍보 자료



플라스틱 다이어트, 함께해요



1

텀블러(개인컵),
다회용 컵 사용 생활화하기

2

장 볼 때는
장바구니(에코백) 사용하기

3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에**
담아가기

4

음식 배달 주문 시
인쓰는 플라스틱 거절하기

5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줄이기

6

음료 구입 시
무라벨 제품 우선 구매하기

7

온라인 상품 주문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8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 소비 줄이기

9

포장 안한 상품 등
구매하기

10

세탁 비닐 등
불필요한 비닐 사용 줄이기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 자원순환 실천플랫폼에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자료



오늘,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머그컵



밖에서는
텀블러

기후행동 1.5°C 앱

※ 기후행동 1.5°C 앱은 환경부가 개발한 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 활동(분리배출, 에너지 절약 등)을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각종 정보와 퀴즈를 함께 제공함.

※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1.5.' 검색후 설치 및 활용 가능

<p>① 홈에서 '기후행동 실천' 선택</p>	<p>② '도전' 버튼 선택</p>	<p>③ 사진 올리기, 소감 작성 후 '도전하기' 버튼 선택</p>

<p>① 홈에서 '기후행동 퀴즈' 선택</p>	<p>② '게임시작' 버튼 선택</p>	<p>③ O/X 퀴즈 풀기</p>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 철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 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p>배출</p> <p>※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p>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 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 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p>※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 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 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 품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p>※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p> <p>※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p>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 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p>※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p>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p>※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p>마. 무색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p>	<p>·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p>	<p>-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p>
<p>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	<p>·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p>	<p>-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을 제거하여 배출</p> <p>※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p> <p>-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p> <p>-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p> <p>※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p>사. 합성수지 비닐류</p>	<p>·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p>	<p>-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p> <p>-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p>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p>※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p> <p>※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p>아. 발포 합성수지</p>	<p>· 스티로폼 완충재</p>	<p>-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p> <p>-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p> <p>-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p> <p>※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p> <p>※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p>자. 의류 및 원단류</p>	<p>· 면의류</p> <p>· 기타 의류</p> <p>· 식물성 섬유(면, 마 등)</p> <p>·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p> <p>·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p> <p>· 기타 합성섬유류</p>	<p>-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p>
<p>차. 전지류</p>	<p>· 수은전지, 산화은전</p>	<p>-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p>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 전자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형광등	· 직관형(FL), 환형 (FCL), 안정기 내장형 (CFL), 콤팩트형 (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수지류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자류	· 수은, 망간전지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소형가전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4.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고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용기 · 농촌폐비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중정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저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동전화단말기	
마.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 부품	· 폐납산배터리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3.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5.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부록 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
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
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